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주요내용

2016. 1. 13

국 무 조 정 실

목 차

I. 실시간 부패감시(Real-time Monitoring)

1. 재난안전통신망사업 관리 1
2. 평창동계올림픽사업 관리 5
3. 대형국책사업 관리 9
4. 방위사업비리 예방시스템 구축 12

II. 선제적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5. 우정사업본부 자산운용 투명성 제고 19
6. 철도시설공단 개혁 23
7. 무역보증 시스템 개혁 25

III. 정보 상시 공유·연계(Information Connection)

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27
9. 국가 R&D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 29
10.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31

IV.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Internal Control)

11. 부처 자체감사 역량강화 36
12. 규제개혁 저해 행태·부조리 개선 39
1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시스템 개선 43
14. 특허권자 보호강화 47

<기타>

15. 환경사업 예산누수 근절 50
16. 부정식품(3대 간식) 안전체계 개선 54

※ 관련 예산 및 자산 내역 57

1

재난안전통신망사업 관리

□ 기존의 사업추진 상황

- 국무회의에서 '국가재난망 사업 세부추진계획' 통과('15.3.31)
 - '15~'17년 재난기관 전용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
 - * 사업추진방식 및 비용 문제 등으로 계속 보류되던 중 세월호 사고 이후 사업추진계획이 최종 확정됨
- 포화상태인 국내 통신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
 - 이통3사, 국내·외 유력 장비업체, 국내 중소기업업체 등이 사업참여를 위해 각축

<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개요 >

- ◇ 사업기간 / 주관 : '15. 11.~'17. 12. / 국민안전처
- ◇ 사업내용 : 운영센터 설치, 네트워크 구축, 기지국 설치, 단말기 도입 등
- ◇ 총사업비(추정) : 1조 7천억원(구축비 9천억원, 10년간 운영비 8천억원)

□ 문제점

①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적고, 예산 집행 등 전문성 부족

- 추정 사업비만 1조 7,000억원에 이르는데도, '국민안전처 내 기획단'은 국민안전처 1명(과장), 경찰 1명, 미래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및 감독이 곤란
 - * 금년부터 기획단 인력이 확충될 예정이나, 대다수가 새로 구축되는 기지국의 운영·관리를 맡게 됨 →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감독할 전문성은 부족
- 미래부는 주과수 배분, 기술방식 선정 등 주요 역할을 종료하여 현재 예산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

②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초기 추진이 잘못될 경우 수십년 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재난안전통신망'은 대표적 기간·설치 사업으로 기지국이 일단 설치되면 매년 운영비만 8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 * 전국망 구축에 필요한 기지국을 11,000개로 추산하고 있으나, 필요 기지국이 과소 계산되어 있어 향후 사업비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 현재 시범사업을 436억원(강릉, 평창, 정선 등 3개 지역)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총 예산 규모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움
 - * 특히, 독일의 재난망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비를 2조원으로 예상하였다가 최종 사업비가 5조원 이상 소요되는 등 사업예상이 실패한 전례가 있음
- 예산 낭비 및 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통상적인 예산 감독과 함께 실시간 검증시스템도 필요함

③ 통신시장은 독과점 구조이므로 사업 쏠 단계 별로 비리가 개입하거나 유착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

- ▶ **(입찰 비리)** 통신사들이 사업지역·가격을 담합하거나 또는 입찰참여를 위한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시 사업자간 리베이트 수수, 입찰 심사위원 로비 등
- ▶ **(납품 비리)** 통신사-납품업체 간 유착되어 납품업체 선정 대가 리베이트 수수 → 사업 원가에 반영되어 결국 국가재정의 손실 초래
- ▶ **(정관계 로비)** 사업예산 책정, 납품업체 선정 등 과정에서 정관계 및 지자체 인사들의 개입 및 금품수수 우려

- 전국 기지국 설치 등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른 후에는 비리를 사후에 적발하더라도 이미 초래된 예산낭비나 비효율을 되돌릴 방법이 없음
 - * 사후 감사나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몇몇을 엄벌하는 것으로는 국가재정 보호에 한계 존재 →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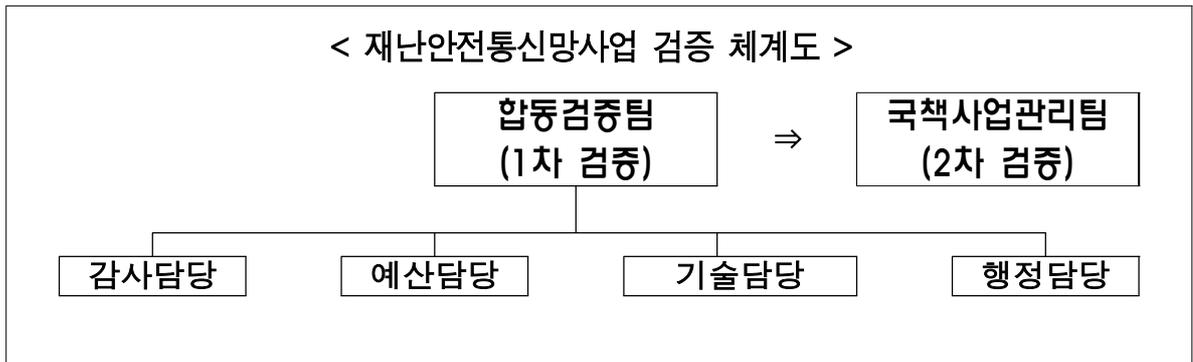
○ 2重 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

- (1차 검증) 부처에 두는 '합동검증팀'을 설치하여 예산편성·집행, 세부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등을 1차 검증한 후 그 결과를 '국책사업관리팀'에 제출

* '합동검증팀'은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예산·기술 등 전문성을 구비한 감사원·기재부·미래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

- (2차 검증)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은 '합동검증팀'에서 제출한 검증결과를 실시간으로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재확인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 확보

* 2차 검증결과는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조치



○ 현장중심의 전주기적인 상시모니터링 제도 도입·운영

- 국책사업 최초로 전주기적인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실시설계, 입찰,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증액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

* 기재부 예산 심사는 예산계획과 규모에 중점, 부처 일상감사는 비사업 부서를 포괄하고 있어 심도있는 감사 곤란, 감사원 감사는 선별적 사후 감사에 중점을 두는 등 사전 모니터링 제도와는 차이점 있음

- 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은 기지국 설치, 장비 테스트 등 현장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으므로 세부절차 및 매뉴얼에 따라 현장 점검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관리

< 사전 검증·관리 사례 >

- ▲ 제안요청서 검증결과, 철탑 풍하중 등 요구규격 미달 14개 사항 시정 조치
- ▲ 정보화전략계획(ISP) 미비점 및 통신망 표준운영절차(SOP) 등 보완 조치

○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밀검증 실현으로 사업 장애 요인 사전 제거

- 전문성이 담보된 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사업내용에 대한 정밀 검증·보완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
 - * 법무부는 수사기법, 감사원은 감사기법, 기재부는 예산, 미래부는 통신, 안전처는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증 실시
- 특히, PS-LTE* 방식은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 기술분야 정밀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추진 장애요인 사전 제거
 - * 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 : 초고속 광대역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검증시스템을 활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밀착 검증하여 사업 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2

평창동계올림픽사업 관리

□ 사업추진 현황

○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확정('11.7.7)

- 12개 경기장 건설(신규 6개, 보완 6개), 16개 접근교통망 구축 및 올림픽 플라자(개·폐회식장) 등 4개 대회관련시설 건설 추진 중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개요 >

분류	사업비	내역	재원
▶ 대회인프라구축	9.4조원	원주-강릉간 철도 등 접근 교통망	국비, 지방비 등
	1.8조원	경기장 및 개·폐회장 등 기반시설	
▶ 운영비	2.3조원	행사, 방송·통신운영, 마케팅 등	조직위 자체수입 등

* 총사업비에는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망사업비 8.4조원 포함

□ 실태 및 문제점

- ① 과거 월드컵 회장사업 비리,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납품비리 등 국제대회 관련 비리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국가 이미지 훼손 등 부정적 결과 초래
 - 파견·임시채용 위주인 한시조직의 특성상 조직관리가 느슨해 지거나 대규모 예산의 단기간 집행으로 비리가 발생할 우려
- ②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에 대한 검증·관리가 필요
 - 국제스포츠행사 유치는 경기장 건설, 도로망 확충과 대회 이후 시설유지 비용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에도 상당한 재정부담이 불가피
- ③ 총사업비 중 운영비는 조직위 자체수입(광고료, 기업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는 구조로서, 적자 발생 시 정부가 부담

- 조직위의 방만운영, 자체수입 확보 노력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확대될 수 밖에 없음
- * '15.12월 현재 후원금의 경우 목표(8,700억 원)대비 57% 수준

④ 공기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

- 정선알파인경기장, 올림픽플라자, 강릉컬링센터 등 주요 시설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업관리가 필수적
- 공기를 맞추는 과정에서 공사부실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⑤ 예산낭비와 비리를 실질적으로 사전 통제하는 체제가 부족

- (문체부) 문체부 내의 통상 감사업무 부담이 상당하고, 올림픽 사업관련 감사 경험은 부족
- (조직위) 감사관 1명이 계약검토 등 내부감사를 전담하고, 회계법인 출신의 민간인 1명이 재무관리책임자(CFO)로 활동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확충할 필요

◇ 동계올림픽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될 경우 국가 재정의 막대한 부담 초래는 물론, 대외 신인도 하락 야기 우려

⇒ 올림픽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관리 강화 필요

□ 개선방안

○ 2重 검증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

- (1차 검증) 문체부에 합동검증팀을 운용하여 예산집행, 총사업비 변경, 세부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1차 검증 후, 그 결과를 국책사업관리팀에 제출

* 합동검증팀은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예산·시설 등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국토부·조달청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

- (2차 검증) 국무조정실의 국책사업관리팀은 합동검증팀에서 제출한 검증결과를 실시간으로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재확인하여 검증의 객관성 확보

* 2차 검증결과는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검증결과를 사업에 반영토록 조치



○ 올림픽 조직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조직위 감사관실에 전문성(계약, 회계, 건설 분야)과 독립성을 가진 감사원 직원 3명을 보강하여 부정·비리행위 모니터링 및 일상감사 강화

* 조직위 감사관실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 3명 보강(과장 1명, 5급 이하 2명)

- 조직위 감사관실은 모니터링 및 일상감사 결과를 합동검증팀장에게 보고하여, 검토·확인하는 심층점검 체계 운용

○ 상시 모니터링 제도 도입·운영

- 기본설계, 실시설계, 입찰, 시공 등 사업추진의 소과정을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사업비 증액 등 예산낭비와 비리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

* 기재부 예산 심사는 예산계획과 규모에 중점, 부처 일상감사는 비사업 분야를 포괄하여 심도있는 감사 곤란, 감사원 감사는 선별적 사후 감사에 중점을 두어 사전 모니터링 제도와 차이점 있음

< 사전 검증·관리에 의한 건설비용 절감 사례 >

- ▲ ○○고속도로 임시IC 건설계획 변경과 관련한 사안을 적극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아울러 관련예산 100억원을 절감함
- ▲ ○○도로 공사 등에 적합한 시공방안을 도출하여 예산 43억원 절감 효과 거양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평창동계올림픽사업 전반을 검증하여 부패유발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자 선정과 예산집행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동계올림픽 사업추진에 기여

3

대형국책사업 관리

□ 사업추진 현황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 대전 도룡지구 등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이온가속기 등을 구축하기 위해 2012~2021년 5.7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R&D사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내 역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3조 3천억원	50개 연구단의 구축 및 신진 연구자 육성 등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7천억원	본원(대전 도룡) 및 5개 캠퍼스 건립
중이온가속기 건설	1조 4천억원	대지 952천㎡, 건축 130천㎡ 건립 및 가속장치 등 설치
기능지구 지원	3천억원	인력양성, 사업화 촉진 등

- '21년까지 총 3.3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연구용역비 집행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부정·비리 발생을 차단할 필요

<정부R&D 관련 감사원 및 부패척결추진단 감사·조사결과>

- ▶ ○○대 교수는 연구원 부당등록 등으로 연구비 3억원 중 2.5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 △△전북대 교수는 10억원 중 5.8억원 용도불명 사용('14년 감사원)
- ▶ 62개 기관 약 50억원 상당의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의뢰(세금계산서 취소, 고의 부도·폐업 등으로 연구비 편취)('15년 부패척결추진단)

②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SOC 사업

- 대규모 공공건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SOC사업은 예전부터 입찰담합, 수주 로비, 설계변경 형식에 의한 공사비 부당 증액, 부실시공 등 각종 잡음과 비리가 수시로 발생해 온 영역
- 특히, 아래 사업은 1조원 이상의 대형 토목사업이자,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도로공사로 생활경제상의 파급효과 상당

세 부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1조6천억원	(기간) 14~21년 (규모) 38km, 정거장 5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1조4천억원	(잠 정)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사업	1조2천억원	(기간) 15~22년 (규모) 11km, 정거장 4개
평창동계올림픽 접근 도로망	8조4천억원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등 5개 사업

□ 사업관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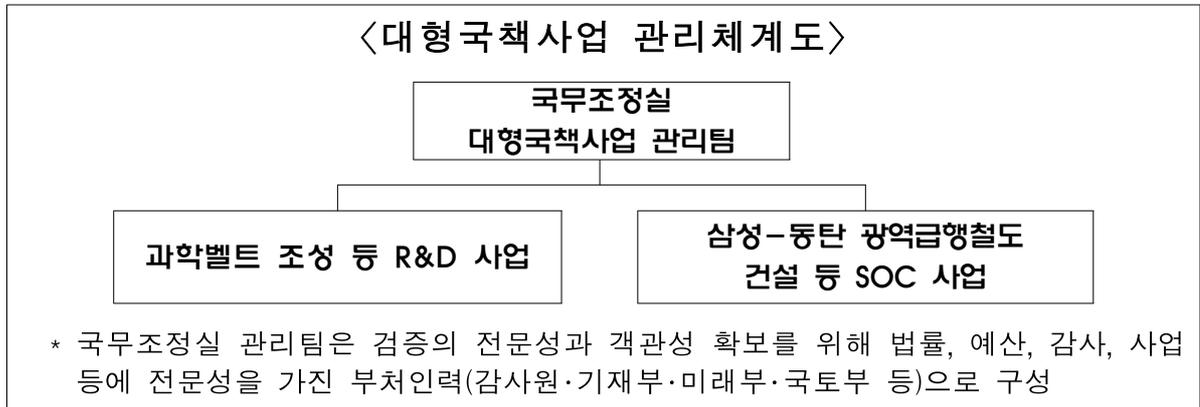
- 대형국책 사업의 경우, 주로 사업 종료 후 감사가 이루어져 사후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더라도 치유가 어렵고, 이미 투입된 예산과 자원이 상당부분 낭비되는 결과 초래
 - *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사(캐나다)를 인수할 때 가치평가나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약 5천억원의 국고손실 야기
- 대형국책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더라도 사업기간이 길고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계획변경 등에 따른 예산 증액 가능성 상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R&D)의 경우 총사업비가 '14.4월 기준 5.2조원에서 5.7조원으로 증액되었고(중이온가속기 4천억원 등) 건설경험이 없는 특수시설의 건설소요가 많아 추가 증액 우려
 - SOC 사업의 경우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 공기지연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사례가 많음
- 대형국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상시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인해 정부가 투입해야하는 예산 규모는 늘어나는 반면, 부정·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
 - 기재부는 소수 인력이 예산규모 결정에 치중, 부처 감사관실은 일상감사 위주로 전문성 부족과 온정적 처리경향, 감사원은 선별적 사후감사로 사각지대 발생

□ 개선방안

○ 대형국책사업에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각 사업별로 관리·감독 조직을 설치할 경우 정부조직 비대화, 국책사업 위축, 관리·감독상의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어
- 국무조정실*에 국책사업관리팀을 두고 각종 R&D 및 SOC 사업을 일괄 관리

* 정부조직법·훈령 등에서 △부처 지휘·감독 및 정책조정 △부정부패·비리 관련 실태파악 및 합동조사 △그에 따른 조치요구 등 권한을 부여



○ 국책사업에 대한 자체감사·사전예방 모델 제도화

- 사업추진 단계별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사업예산 증액, 부정·비리 요소 등을 사전 차단

*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서, 특별조직을 설치하여 공적자금 사용 실태를 실시간으로 감독한바 있음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대형국책사업 상시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착·확산함으로써 국책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신뢰 제고

4 방위사업비리 예방시스템 구축

□ 추진 배경

- 방위사업 비리는 『기종선정 → 성능평가 → 원가산정 → 계약 체결』 등 방위사업 쏠 단계에서 발생

비리 유형

- **[기종선정]** 통영함 등에 뇌물을 받고 60년대 수준의 음향탐지 장비인 '싱글빔' 채택 → 인수가 지연되어 수백억 원 손실 초래 (14명 구속)
- **[성능평가]** '해상작전헬기' 도입시 육상전용 모델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평가 위조 → 선급금 1,757억원 등 법률분쟁 (6명 구속)
- **[원가산정]** 수리온 헬기 원가를 547억원 과다 산정 (감사원 수사의뢰)
- **[계약체결]** 소해함(기뢰제거) 장비를 구매하였다가 성능미달로 계약취소 →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선급금 557억원 환수 곤란 (감사원 지적)

- 현행 감독체계의 문제점과 선진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비리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 비리를 사후 적발하더라도 이미 국방 전력에 누수 발생 → 사후 처벌을 계속 강화함과 동시에 강력한 비리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선

□ 현행 감독체계

【 조직도 】



- 3국·2본부가 사업 결정 → ▲ 법률상 감독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 사업 내용상의 감독은 사업감사담당관이 각각 담당
- 방위사업청 인원(1,653명), 예산(年14.3조원 국방비의 40.3%) 대비 감독 인력은 40명(전체 2.4%)에 불과하고, 사전·사후 감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지 않음

□ 문제점

- 인력 부족, 업무 과중으로 사전 감독체계 미비
 - 軍법무관 16명이 年 법률자문 2,500건, 소송 300건을 담당하고, 감사직원 13명이 연간 130건의 사업을 감사
- 법률상의 감독기능과 내용상의 감독기능이 제각각 분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사업 내용보다 계약서 검토에 치중, 사업감사담당관실은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체계적인 감독 미흡
- 軍지휘부·사업부서로부터의 독립성 침해 우려
 - 감독부서장 직급(서기관급)이 상대적으로 낮고, 軍 계급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내부 의사결정 구조

□ 개선방안

◇ 기존 방위사업청 모델은 비리 차단에 실패 → 국가재난망 사업, 대형국책사업에 이어 방위사업청에도 새로운 『비리예방시스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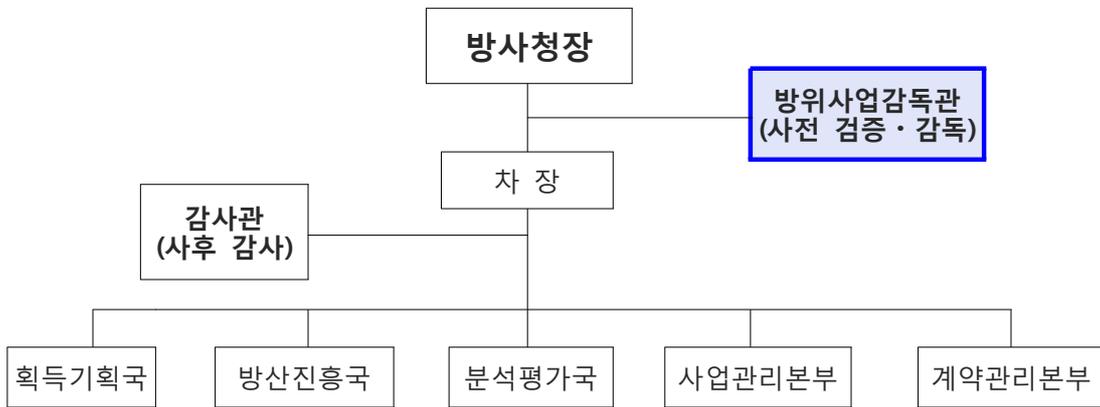
①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여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 방사청에서 수행하는 주요 방위사업의 착수·진행 및 계약체결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전 사업검증·조사, 정보수집 기능 수행
 - ※ 비리수사, 감사 등 사후적발 시스템만으로는 “무기획득체계의 합리적 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비리에 따른 피해액 환수에도 한계
 - 방위사업의 착수 및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단계에서 방위사업 감독관의 법률 검토를 의무화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을 수행

< 무기획득절차 개요 >

획득 절차	정책				집행			운영
	소요 제기	소요 결정	중기 계획 작성	예산 편성	계약, 사업관리 (연구개발, 구매)	시험 평가	양산 배치	운영 유지
기관	軍	합참	국방부	방사청	방사청	국방부 합참	방사청	軍

-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고도의 직무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독립성 보장 규정을 마련

- 방사청 감사관과의 정보공유, 협업 등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방위사업감독관은 사업검증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한 비리 예방·감시 기구로, 감사관은 사후 감사 및 감찰 기구로 합리적 역할 분담

👉 미국의 국방계약감사기구

- 미국 국방부는 ① 감사관, ② 법무실외 별도의 ③ 국방계약감사기구(Defence Contract Audit Agency, DCAA)를 통한 3중 감독체계
- 국방계약감사기구(DCAA)는 (i) 별도 기관으로 운영(長은 국방부장관이 임명), (ii) 협상단계부터 참여하여 국방계약의 사전 감독역할 수행
- ▶ (직원) 직원 4,933명 중 24%가 회계사 등 전문가

- ▶ (업무) 국방부 및 산하기관의 모든 획득계약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원가 등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예방감사
- ▶ (성과) '13년 6,200건, 1,630억\$ 상당의 계약을 감사 → 44억\$ 회수 (평균 5-9% 회수)
- ※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관은 美 국방부 법무실과 국방계약감사기구의 기능을 종합한 것임

② 방사청의 자체 감사기능 강화

- 사후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관실을 대폭 보강
 - 감사2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감사담당관별 전담 사업분야를 지정하여 감사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 * (예시) 감사1담당관 : 기동화력/함정/항공기 사업부
감사2담당관 : 지휘정찰/유도무기 사업부
- 법률·원가·계약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감사인력 구성을 다원화하여, 감사업무 투명성 제고 및 뇌주기식 감사 배제

③ 방사청내 軍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

가. 장군 및 대령 인사

- 방사청 보임 후에는 전역시까지 방사청에서 계속근무 원칙 적용
 -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장군 및 대령은 출신(방사청, 軍)에 상관없이 방사청에서 연령·근속·계급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하여 인사 독립성을 강화
- 방사청에 우수 군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 강구
 - ※ 방사청내 少將(방산진흥국장) 직위는 원칙적으로 방사청 준장 중에서 승진 보임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기회 부여

나. 중령 이하 인사

- 우수인력 확보와 무기 소요실태 파악 등을 위해 중령 이하 인력은 현행 순환근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
 - * 중령은 대령 승진 이후에는 軍과의 인사교류 없이 방위사업 업무만 전담 수행하게 하여 방위사업 업무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
- 일반형 군인력이 소속 軍으로 복귀시 방사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한 협의권을 부여하여 방사청 재직 중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보장
 - * 획득형 군인력은 군에서 순환근무시 획득전문직위에 보임 예정

< 순환근무제 ('15.1. 시행) >

- ▶ 방사청 소속의 획득형 군인력은 방사청 5년 근무시 軍의 획득부서에서 1~3년간 근무 후 방사청으로 복귀
- ▶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일반형 군인력은 방사청 3년 근무 후 소속 軍으로 복귀

④ 방위사업 담당공무원의 퇴직 후 민관유착 여지 차단

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강화

- 방위사업 담당 군인·공무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퇴직자 불법로비가 방산비리의 주요원인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비리 차단 대책 강구
-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체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불법로비 소지를 차단
 - * 방사청의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자는 방위력 개선업무, 국방계약 등의 부서에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상의 군인임(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이와 동시에 방사청 인력이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 대책 강구

나. 국방부 '취업심사위원회' 신설

- 전역 군인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기 前에 취업심사위원회에서 외부위원 참여 하에 실질적인 자체심사를 수행

다. 취업제한 공직자 고용업체의 제재 강화

- 방산업체가 퇴직공무원 고용시 대상자가 취업심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취업제한의 실효성 제고
-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한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방산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 마련

⑤ 무기중개상 관리 및 비리 연루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가.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도 법제화

- 방위사업 부정당업자의 30%는 해외 무기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나, 관련법 미비로 무역대리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제재 곤란

* 전체 방위사업 부정당업자 지정 440건 중 국외조달 부정당업자 지정은 30%인 132건임('09 ~ '13)

- 「방위사업법」에 무역대리점의 등록, 중개수수료 신고,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강화

- 무역대리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현재 방사청은 자체 예규로 무역대리점을 관리 중

< 무역대리점 관리 및 제재 전·후 대비 >

구 분	현 행	개 선
조달원 등록	예규로 관리, 등록의무 없음	법률에 근거 마련, 등록의무 부과
수수료 신고	별도 규정 없음	신고의무 부과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없음	제출의무 부과
위법행위 제재	별도 규정 없음	등록취소, 2년간 등록금지
위법행위 처벌	별도 규정 없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나. 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강화

- 비리연루 업체(불법로비, 금품제공 등)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상 상한인 2년까지 제재 강화
 -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상 1년 이내, 시행규칙상 6월 이내로 규정된 것을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2년 이내로 강화

다.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의 징벌적 가산금 부과

- 방사청 납품 업체가 비리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그 부당이득 외에 부과되는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여 비리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
 - 현행 방위사업법상 부당이득금 외에 부당이득금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한 규정을 대폭 강화
 - 부당이득금 외에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라. 계약체결시 비리 연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명시

- 방위사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방산업체가 비리에 연루된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수용토록 명시하여 배상책임을 분명히 함
 - 배상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증서 제출 등 방안을 검토

□ 향후 계획

- '16. 1월 중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을 위한 직제 개편 등 후속 조치 및 종합적인 비리 근절 대책을 신속히 추진

5

우정사업본부 자산운용 투명성 제고

□ 자산운용 현황

-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예금·보험 등 약 105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 공공 부문에서 국민연금(470조원)에 이은 2위
 - * 예금부문 자산 63조원, 보험부문 자산 42조원을 운용하면서 국내 투자비중이 높아 ‘자본시장의 숨겨진 공룡’으로 불리고 있음
- 지난 10년간 우정사업본부의 운용자산 규모는 2배 이상 증가
 - * ('03) 55조원 → ('06) 59조원 → ('09) 74조원 → ('12) 102조원 → ('14) 105조원으로 대폭 증가

□ 실태 및 문제점

-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이 적고 전문성 부족
 - 예금사업단(3과3팀)·보험사업단(3과2팀)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인력은 40여명에 불과하고,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 * 자산운용 인력 40명 중 60%는 일반 공무원이고, 40%만이 민간 금융 분야 근무경력을 보유
 - 운용 자산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임에도 자산 운용 인력이 적어 현재 직원 1인당 평균 2.5조원을 관리
 - * 자산을 위탁 운용할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실무자들의 재량이 과도
- 민간 금융회사와 대비하여 내부의 견제구조 취약
 - 일반 시중은행들은 자산운용부서의 자의적 자금운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위험관리부서’를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설치·운용하고 대등한 위상을 보장
 -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의 長이 팀장급(4·5급)에 불과하여 자산운용부서에 비해 위상 및 독립성이 취약

< 일반은행과 우체국금융의 위험관리부서 >



위험관리부서의 대등한 견제기능 보장

위험관리부서의 위상이 사업부서에 비해 취약

○ 자산운용 실무자들의 재량 대비 상시감사 기능은 미흡

- 미래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체 감사는 통상 복무기강 및 행정·예산집행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외부 감독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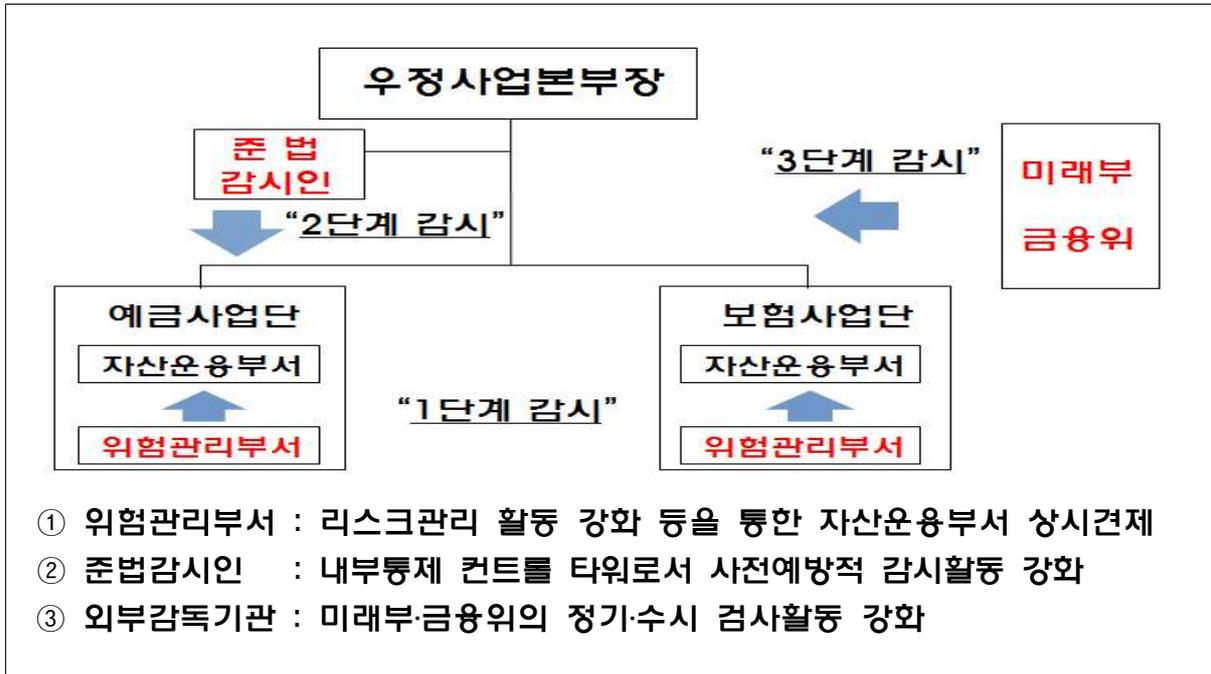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래부장관은 필요시 우체국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검사 요청이 가능하나 활용이 미흡

- 우정사업본부의 감사부서는 금융전문성이 없는 감사담당관(과장급, 비개방직) 이하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1명이 금융업무에 대한 감사를 전담
-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있으나, 예금위험관리과장(공무원)이 겸직하고 있는 등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온전한 역할수행이 곤란

◇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가 예금 전액을 보장해야 하므로 그 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국가 재정의 막대한 손실 초래

⇒ 시중은행 수준으로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

□ 개선 방안 - “3重의 통제시스템 구축”



○ (1단계) 위험관리부서의 자산운용부서 상시 견제

- 사업단 내 위험관리부서를 현재 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격상하여 자산운용부서(과장급)에 대한 견제기능 및 독립성 강화
- 투자심의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 대상도 늘려 자산운용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

* 우정사업본부 내 리스크가 큰 투자건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

- 자산운용지침, 위험관리규정 등 자금운용에 관련된 내부규정 (총 20개)을 전면 재검토하여 통제 기능이 미흡하였던 부분을 일괄 개정

○ (2단계) 준법감시인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

- 우정사업본부장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를 부서장으로 하는 준법감시부서를 신설하고, 실무자는 물론 경영진까지 실질적으로 감독

- 준법감시인 산하에 금감원·예보 직원을 파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요 투자계획과 금융회사 선정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 하는 등 비리예방기능 부여

- (3단계) 미래부·금융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외부 감독

- 미래부장관이 금융위원회에 요청하여 2년 내 1회 이상 정기 검사 실시, 금융사고 발생시 수시 검사를 요청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인력을 지원 받아 정기·수시 검사를 실행

□ 진행 상황 및 계획

- '15년 12월 미래부·우정사업본부의 위험관리지침 등 20개 내부 규정 제·개정은 완료·시행 중

- '16년 1월 내 우정사업본부 직제 개정을 완료할 예정

6

철도시설공단 개혁

□ 현황

- 철도시설공단은 '12년~'14년 연 평균 500여건의 입찰을 통해 12조원 대의 부품·용역을 구매하고 있음
 - * 열차 자동제어장치·화재감시장치 등 납품, 철도 선로 유지보수 등

□ 실태 및 문제점

- 특정학교 출신의 편중 현상
 - 철도시설공단은 특정 학교 출신이 2급 이상 직위의 50%, 공사 용역 발주 관련 내부심의위원의 70%를 차지
- 재취업 제한 대상이 협소
 - 철도시설공단 퇴직자가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으나, 재취업 제한 대상은 임원(7명)으로 한정
 - *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2급 이상 중 임원 출신은 15%에 불과한 반면, 1·2급 출신은 85%에 이르러 재취업 제한의 사각지대 발생
- 입찰·구매 과정의 절차 미흡
 - 철도자재의 14%('14년 38개 품목, 274억원 구매)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공단의 설계시방서 결정에 따라 업체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림
 - * 최근 7년간 관련 부패행위 중 74%가 설계 단계에서 발생
- 독과점 품목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신규 개발품목은 사전에 규격이 공개되지 않아 개발未참여업체는 나중에 입찰단계에서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됨
 - * 최근 5년간 물품구매액 2.5조원 중 63%가 수의계약

□ 개선 방안

- 재취업이 제한되는 퇴직자 범위를 확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16년)
 - ※ 공공기관은 임원 이상만 재취업 제한 대상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비리를 계기로 '14 .7월부터 2급 이상으로 확대
 - 재취업 제한 퇴직자를 고용한 사실을 숨긴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신설 (시행 중)

- 인사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정성 확보
 - 공사용역 심의위원회의 특정학교 출신 비중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출신학교가 같을 경우 해당 심의업무 회피를 의무화 (시행 중)
 - 계약처장 등 핵심보직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외부전문가로 교체
 -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부서와 별개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여 비리 사전예방기능 부여 ('16년 상반기)

- 비리발생 부서의 계약업무 조달청 위탁 (시행 중)
 - 입찰·계약 비리가 발생한 사업부서는 입찰부터 계약까지 일체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비리소지를 원천 예방

- 未규격 철도자재 38개 품목의 규격화를 완료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 차단 및 독과점 해소 (시행 중)

7

무역보증 시스템 개혁

□ 실태 및 문제점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사전심사와 사후 관리가 부족하여 모뉴엘 사기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함

* 총 3조원 대의 사기대출 사건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실 보증으로 인하여 최대 약 3,500억원의 국고 손실 우려

- 산업부·금융감독원의 합동 감사를 통해 실태조사 실시
 - 모뉴엘 사태는 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 미이행, 보증한도 부정 확대, 전결권 위반 등 총체적 부실 심사가 원인
 - 특히, 수출입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

- ▶ 평가대상 수입업체는 연간 58,646개에 이르는 반면, 기업조사팀 직원은 4명에 불과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곤란하고, 핵심적인 신용평가 업무를 외부 업체(직원 17명)에 위탁하여 운용
- ▶ '08년~'14년 보증사고업체 2,193개 중 30%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70%는 외부업체에서 평가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보증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

□ 개선 방안

- 보증심사 절차 및 보증한도 책정절차 강화
 - 50만 달러 이상 수출계약에 대하여는 현장실사 등 진위 여부 확인을 의무화
 - 1억 달러 이상 계약시 사장이 직접 결재토록 하는 등 전결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자의 책임성을 강화

○ 사후 관리체계 개선

- 연 2회 보증 기업 전체에 대한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징후 기업을 사전에 걸러내어 보증 한도를 축소·폐지
- 관세청·국세청 등 유관기관간 해외기업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거짓 수출행위 적발

○ 자체 관리감독 체계 및 외부통제 강화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부장급) 이상 직원은 공직자에 준하여 재산등록을 의무화
-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보증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책임 강화
- 종래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감독이 없었으나, 법률을 개정하여 금감원 정기 검사를 받도록 개선

□ 진행 상황 및 계획

- '16년 상반기 중 2급(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
- 나머지 개선방안은 무역보험법 및 무역보험공사 내부 규정의 제·개정을 완료하고 현재 시행 중

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검토 배경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이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사례별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
 - * '15년 국고보조금은 총 58.4조원 규모로서 부처별로 분산 집행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관리함
- '17년 상반기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망에 의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나, 그 이전이라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이 필요

□ 개선 방안

- 최근 검찰·감사원에 적발된 부정사례 134건을 정밀 분석하여 '15년~'17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맞춤형 대책 마련

사례별 대책

①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정 정산이 전체 중 18.7%를 차지

- (사례) 사회복지관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집행내역 수억원 허위 정산
- (대책) (i) 현행 종이세금계산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 명의로도 쉽게 위조 가능
→ 국세청에 등록된 회사만 발급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 (ii) 국세청과 연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번호만 대조하면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효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원천 차단 가능

② 거래상대방과 짜고 계약서 금액을 부풀린 사례가 전체 중 21.5%

- (사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보조사업자 83명이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아 보조금 15억원 편취

(대책) (i) 보조사업자가 공사·물품 계약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사용하여 최저가 입찰자와 거래 →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래 차단

* 2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시 나라장터 의무화

(ii) 운영비를 현금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클린카드(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여 현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 방지

(효과) 기존 조달시스템을 활용하므로 별도의 재원 없이도 금액 부풀리기가 어렵게 되어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예상

③ 보조금 지급조건을 허위로 충족한 보조금 부당청구 사례가 30.5%

(사례)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요건 미달 사업자에게 45억원 부당지급, 보육 시설에서 보육시간·투입인력을 실제 보다 부풀려 보조금 허위 신청 등

(대책) 현재는 공무원이 검증하는 체계이나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함 → 3억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법인에 정산보고서를 검토 받도록 하여 정산에 대한 외부 검증 강화

(효과) 부정 신청사례가 다양하고 일일이 현장 확인을 통해 적발할 수 밖에 없어 100% 차단은 어려우나, 대부분의 경우 방지 가능

④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유인 차단

(대책)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i) 보조금 사업에서 영구 배제하고, (ii) 보조금의 5배 이하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억지책 마련

* 사후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비리 동기 차단

□ 진행 상황 및 계획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완료('15.7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부처별 보조금 관리지침 개정 추진 중 ('16년 내 신속 추진)

9

국가 R&D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

□ 검토 배경

- 국가 R&D 예산 규모는 '15년 기준 18.9조원이고, 이 중 대학에 지원되는 R&D 연구비는 연간 4.1조원 규모에 이릅니다
- 매년 취업·입대한 학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수십억 원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도, 국가재정 누수를 막을 근본적 대책은 부족

* R&D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간 1.4조원으로 대학 연구비의 35%를 차지

□ 개선 대책

- 단기 대책 ('15년~'17년) ⇨ 「국가R&D사업 표준매뉴얼」 개정·시행

① 취업한 졸업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받은 사례가 전체 중 88%

(대책) (i) R&D 참여연구원은 1년 마다 '건강보험확인서'를 각 대학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인건비 지급 前에 他기업에 취업 여부를 사전 검증

(ii)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위 '건강보험확인서'의 진위 여부 확인

(효과) 일일이 확인서를 발급·제출해야 하는 다소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취업자에 대한 인건비 부당지급은 원천 차단 가능

② 휴학·입대한 학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받은 사례 12%

(대책) (i) 대학 별로 학적DB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휴학·입대한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ii) 대학 별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관리감독

(효과) 대학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인건비 부당지급을 사전 예방 가능

③ 위조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 (최근 적발 사례는 없음)

(대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에 준하여 (i)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하고, (ii) 국세청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사전 검증

(효과) 위조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연구비 부정신청을 원천 차단 가능

○ 장기 대책 (17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

- '17년 말까지 「R&D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공단·국세청DB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신청이 자동 적발되도록 전산시스템 통합

10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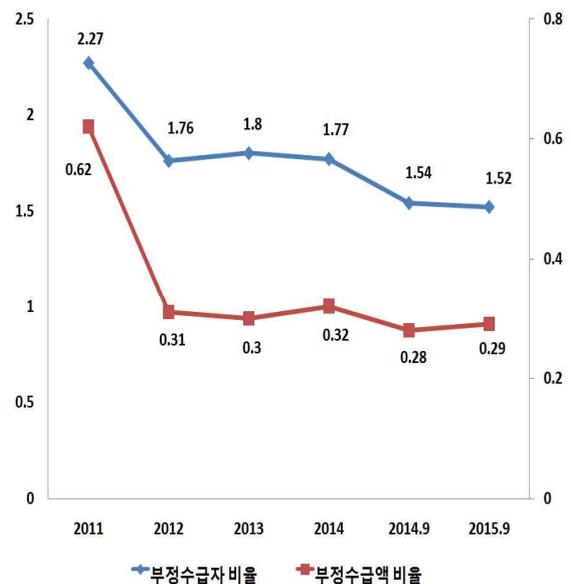
□ 현 황

- **(실업급여 예산)** '15년 4조 9,311억원 (사업주·피고용인 보험료로 충당)
→ '15년 지급액 4조 5,473억원
- **(수급요건)** ① 1년 6개월 내에 180일 이상 근로, ②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③ 해고자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인 경우
→ 90~240일 동안 퇴직 前 평균임금 50% 지급
- **(관리체계)** 고용부(47개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관리 담당 → 그 중 조사 업무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들이 전담

- **(부정적발)** 연간 148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4.5조원 대비 0.32%에 불과

→ 그래프상 부정수급자 비율이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적발되지 않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을 소지가 다분

- * 연간 22,000명 적발 → 1인당 적발액 평균은 59만원에 불과하는 등 경미한 사안만 주로 적발



- 부정수급 유형은 ① 취업사실 은닉 81.8%, ② 아르바이트費 등 소득 은닉 7.5%, ③ 위장 해고 등 자격 허위신청 7.3%, ④ 기타 3.4%임

(사례1) 건설회사 대표가 친·인척 명의를 빌려 실제 일하지 않았음에도 고용하였다가 해고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자신이 사용

(사례2) 병원 원장이 계속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해고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 간호사와 분배

□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① 신청 단계에서 걸러내는 '사전 방지시스템'이 부족함

- 취업사실 은닉 여부를 주로 '4대보험 가입 현황'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새 직장의 사업주와 공모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음

* 유관기관 정보 공유에도 시차 존재(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현황 2주, 국세청 근로내역 3개월)

- 최신 부정수급 사례를 분석·반영하지 못하여 형식상 서류에 의한 심사가 대부분 → 조직적·전문적 부정수급에 취약

* 사업주가 이익을 분배받는 대가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줄 경우 적발이 곤란

- 부정수급 전력자, 우범자,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부정수급 원천 차단이 어려움

② 부정수급 '사후 적발시스템'도 부족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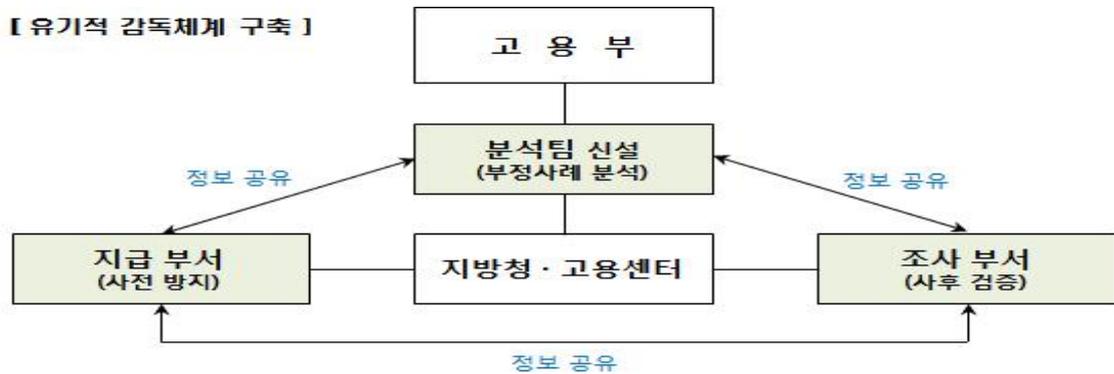
- 부정수급 적발률은 0.32%(4.5조원 중 148억원)로 미국(8.3%)·독일(4.0%)·영국(3.0%) 등 선진국과 대비하여 매우 낮은 편

- 조사 담당자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

③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제재 수위가 낮음

- 현재는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부정 수급액 1배만 추가 징수
→ 제재가 약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차단하지 못함
 - * 부정수급을 다수 반복하더라도 가중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재범률도 높음
- 최근의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오히려 주도하고 있음에도, 사업주가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 부정수급자를 연간 22,000명 적발함에도 형사고발 건수는 500건 안팎에 불과

□ 개선방안



① [신청 단계] 사전 방지시스템 구축 → 지급 前 미리 확인하여 1차 차단

- 현행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유관기관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간 공유

확대할 유관기관 정보	기대 효과
국세청 근로소득 조서	• 사업주의 인건비 신고 내역을 통하여 '취업사실' 확인
법무부 출입국정보	• 실질적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 부정수급자 사전 차단
행자부 주민등록등본	•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확인을 통해 공모 의심자 추출

- 우범자, 취약 사업장, 자료 불일치 등 '부정수급 위험군'은 실업 급여 지급 이전에 경고시스템 도입 → 의심시 확인 후 지급

- ② **[지급 전후]** 『부정수급 분석팀』 신설 → 문제 사례를 분석·추출하여 2차 차단
- 『부정수급 분석팀』은 상시적으로 부정 사례 및 의심 사업장을 분석 → ① 지급 부서에 통보하여 부정수급 사전 차단에 활용, ② 조사부서와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자료로 활용
 - * 조사부서는 단속 결과를 ‘분석팀’에 피드백 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용
- ③ **[지급 이후]** 조사부서 활성화·전문화 → 단속을 통해 3차 차단
- 고용부 조사관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여 압수수색 등 실효성 있는 조사권 보장
 - 조사팀을 활성화하고, 조사 전문인력 확충
 - * 민간 보험회사와 같이 부정수급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직 경찰관을 일부 계약직 채용 → 조사 노하우 공유·전파
 - 단속 실시
 - ‘부정수급은 엄단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 → 불법 사업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엄단할 예정
- ④ **[처벌 단계]**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 범죄동기 차단
- 불법에 가담한 사업주를 집중 단속 →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입건하고, 사기죄도 적용하여 징역형 선고 등 엄단
 - * 앞으로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려면 전과자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매우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는 위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보험료 할증제도 도입
 - * 교통사고를 반복하는 사람은 보험료율이 상승하여 스스로 운전을 조심하게 되듯이, 불법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율을 올려 경제적 제재 → 범죄동기를 원천 차단

- 공모형·조직형 부정수급자는 현행 부정수급액 1배 → 5배까지 추가 징수
- 반복적 부정수급자는 지급 이전에 경고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3회 이상 적발시 최대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

⇒ 부정수급시 ① 형사처벌, ② 보험료율 상승, ③ 부정수급액의 5배 부과, ④ 정기 감독 등 복합적으로 제재하여 사업주들이 부정수급에 가담할 엄두를 못 내도록 할 예정

□ 진행 상황 및 계획

- 유관기관 정보공유 확대, 제재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은 '16년 내 추진하고, 나머지 방안은 즉시 시행 예정

11 부처 자체감사 역량강화

□ 부처 자체감사 개요

-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활동 및 기강을 규율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10년) 등 정부 차원의 자체감사 개선 노력 시행

* 감사대상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608개 기관('13년 기준)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비교>

구 분	감사원 감사(감사원법)	자체감사(공감법)
감사범위	결산·회계검사, 직무감찰	기관의 모든 업무·활동 감사
감사대상	총 65,253개 기관('14년)	중앙부처(44), 지자체(259), 공기업 등(305)
감사방법	자료요구, 서면·실지 감사, 출석, 봉인	좌 동
결과처분	변상, 징계, 시정·주의, 개선권고, 고발	좌 동

□ 실태 및 문제점

- 공직사회내 부조리·부패의 개선 필요성이 절실하나, 감사원 감사 및 단발적 수사만으로는 부패척결에 한계가 있음
- 자체감사가 복무·기강 감사에 치우쳐 비위 적발·시정 기능이 미흡하고, '제식구 감싸기' 경향 및 전문역량 부족 등으로 국민 불신이 여전

< 최근 자체감사 온정적 처리 사례 >

- ▲ ○○부 감사관실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금품 245만원 수수 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에 그침
- ▲ ○○부 감사관실은 산하 공사 시설에 대해 무자격자가 안전점검한 시설이 102개소임에도 65개소로 축소하고 '현지시정' 조치로 종결
- ▲ ○○부 조사담당관실은 32만원 수수 혐의로 비위사실 통보된 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로 종결

⇒ 정부차원에서 자체 감사부서의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엄정한 감사체계를 정립하는 등 각 부처의 자정역량 강화 필요

□ 추진 경과

- 쏠 부처를 상대로 자체감사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차원에서의 방향제시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정('15.12월)
- 부처별로 자체감사 역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각 부처의 자체 감사 개선 실태 및 감사 우수 사례를 정부내 공유·전파
 - * 자체 감사전문과정 운영(국토부 등), 내부통제 자체평가제도(CSA) 도입(환경부), 지방청간 교차감사 등 감사방법 개선(국세청 등), IT자율감사 체제 구축(관세청), 책임감사인제 운영(기재부) 등

□ 개선방안 : 자체감사 역량 강화 규정(총리훈령)」 제정

- (제정 취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패근절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사부서의 역량 강화를 통한 부처 자정시스템 확립
 - 총리의 국정통할권,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권 등에 근거하여 '공감법'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고, 정부차원의 방향 제시
- 훈령 세부내용
 - ① 독립성 강화
 -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독립성 보장 강화
 - 각 부처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 및 개최주기 명시 등 운영 활성화
 - 감사부서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영시 외부 임용 원칙
 -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담당 직원의 추천권 부여

② 감사전문 역량 강화 및 적절한 인력 배치

- 신규 직원의 감사교육 의무화, 최신 기법 습득 등 전문역량 강화
-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 배치 및 회계사 등 전문인력 보강
- 감사담당자의 근평·전보·수당 등의 우대 및 감사부서 주요 직위에 전문관 임용, 장기근속 활성화

③ 실효성·투명성 확보

- 감사담당자가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직무 배제
-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감사결과 처분
- 부패위험성이 높은 직위에 대한 자체 부패위험성 평가 실시
- 부서내에 상당한 비위 의심이 있는 경우 부서장의 감사요청 의무
- 기관간 감사인력 교류, 감사협조 요청 등 업무개방성 강화
- 구조적 부패행위 등이 드러난 경우 개선대책 수립 의무
- 부처의 소속기관 등 자체감사활동 평가 및 시정요구
- 국무조정실장의 총리훈령 이행상황 확인·점검, 개선요구 등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각 부처는 총리훈령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감사규정을 개선·정비하고, 부패 위험성 평가 등을 위한 자체 계획 시행
- 총리실은 감사시스템 개선 후 부처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점검체계 운용
- 정부 곳곳에 잔존해있는 공직부패 및 이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들을 부처가 자율적 근절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국민신뢰 제고

12 규제개혁 저해 행태·부조리 개선

□ 추진배경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공무원의 권한남용·소극적 업무처리 등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많은 애로 호소
- 행정 현장에서의 과도한 규제개혁 저해 행태는 각종 비리의 유발 요인으로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됨

□ 실태점검 결과

- 규제개혁신문고·부정부패신고센터 등 정부합동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무조정실·행자부 등 부처 협업하에 중앙행정 기관·지자체 등 107개 기관을 집중 점검

* (점검기간) '15.9.7~11.6(2개월)

- 특히, 규제개혁 신문고 등에 접수된 행정 현장에서의 규제권한 남용 및 소극적 업무처리 등 불합리한 행태를 중점 실태 조사

- 실태점검 결과, 규제남용·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등 부당한 업무처리 99건*, 개선 필요 사항 41건 발굴

* 규제남용 21건,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22건, 처리지연 27건, 무사안일 29건

- (규제남용)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법령상 근거 없는 조건부과·서류 제출 요구 등

▲ □□군은 '14.12월 등 '다가구 주택(8가구) 신축' 민원에 대하여 '6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허가를 제한하라'는 기관장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려처분

▲ ○○시는 '14.5월 '공장신설 승인 신청' 민원 등 4건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민원처리를 최대 517일 지연

-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계약시 필수 반영경비 기업체 전가 등

- ▲ ○○ 공공기관은 하계(일반)작업복 구매시('13.2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이 아님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2년 이내에 3억원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 창업·중소업체의 참여 제한
- ▲ □□군은 '11.12월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4년간)' 계약 시 폐기물처리비, 안전점검비 등 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 2,274백만원을 업체에 부당 전가

- (처리 지연) 행정소송·심판 결과 미이행, 인·허가 등의 민원 처리 지연 등

- ▲ ○○대공원내 캠핑장 등록신청에 대한 ○○시 △△구의 반려처분('15.4월)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 결정('15.6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
- ▲ □□군은 '13.1월 '토석채취허가 신청' 서류에 흠이 없는데도 담당자가 서류를 방치하다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30일)을 초과하여 441일간 지연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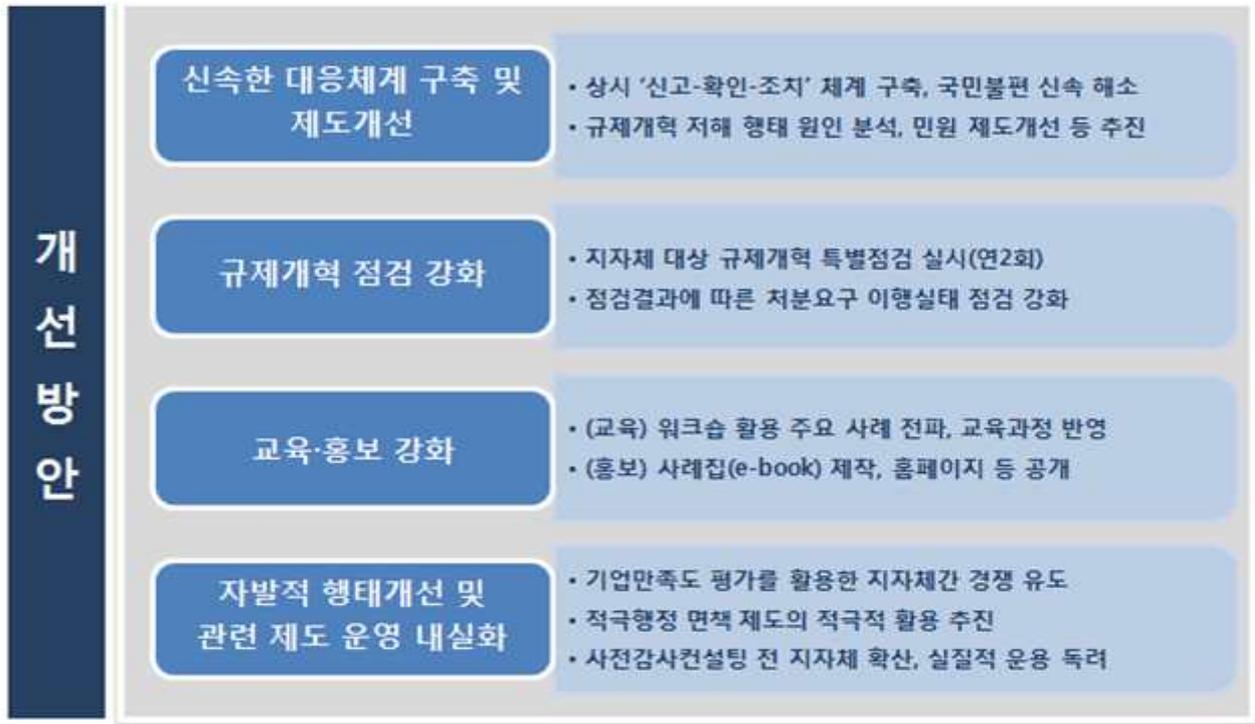
- (무사안일)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불공정 거래행위 방치 등

- ▲ ○○군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업계획(무기성오니를 활용한 화력발전소 연료 생산)에 대해 적합한 사업으로 안내('14.2월)하여 해당 업체는 최종 허가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공장을 신축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 발생
- ▲ □□군에서는 '13.4월~'15.9월까지 건설공사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하도급 업체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23개 업체가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4,334백만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결과 초래

- (개선필요사항) 자치법규 등 관련 규정 정비, 기업 부담 감소를 위한 규제완화, 공장창업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 ▲ ○○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 필요
- ▲ ◇◇연구원은 모든 시험비용 산정시 시험항목 수수료 외에 기본료 10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시험비용의 최소금액을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 부담 가중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관리규정에서 기본료(10만원) 및 시험 최소비용 (20만원) 규정 삭제 필요

□ 개선방안



① 점검결과 후속조치

- 규제남용,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해당 기관 통보
- 발굴된 개선필요 사항 중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안은 즉시 개선조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

② 규제개혁 저해·소극적 행태의 종합개선대책 추진

- 불합리한 규제집행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강화 등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민원·인허가 제도 개선
 - (신속대응체계)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활용한 규제개혁 저해 사례 상시 신고접수 및 신속한 확인·시정조치 체계 구축
 - (제도개선) 국조실·행자부·법제처 등 관계부처 T/F 운용, 접수 거부·처리지연 등 부당한 행태 근절을 위한 민원 제도개선 및 인허가 법령개정 등 추진

- 규제개혁 저해 행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조치 강화
 - (특별점검) 지자체 대상 규제개혁 관련 특별점검 실시(연2회)
 - (집행실태 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등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강화로 온정적 처분 방지 및 집행력 제고
- 공직자 인식·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지속 추진
 - (교육) 점검결과 주요 사례를 공무원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전파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등 교육과정에 반영
 - (홍보) 규제개혁 점검결과 사례집(e-book) 제작, 홈페이지(부패척결추진단, 행자부 및 각 시·도 등) 및 언론 공개
- 자발적 행태개선 유도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운영 내실화
 - (자발적 행태개선) 지자체 행정행태 등에 대한 기업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한 기업체감도 지도를 정교화*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 행태 개선 촉진
 - * 조사대상 기업 확대, 설문항목 검토 등을 통해 평가의 적합성 제고
 - (적극행정 면책) 지자체 공무원 대상 순회교육, 사례집 배포 등으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도모
 - (사전감사 컨설팅) 전체 시·도 도입 확산 및 활용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한 실질적 운영 독려
 - * 행자부 및 경기·제주·충남 등 11개 시도 도입, 전체 지자체 확산 추진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유관부처간 협업을 통해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철저한 후속조치
- 현장 공무원의 부당한 규제개혁 저해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1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시스템 개선

□ 추진배경

- 공정위 조사절차의 불투명성과 불합리한 현장조사관행은 불필요한 기업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 (내부통제 미흡) 사건처리 지연, 사건기록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 * (불합리한 조사관행) 공정위 조사권한은 피조사업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조사이나, 실제로는 강제조사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존재
- 또한 내부통제 체계 미흡은 절차하자로 인한 패소를 유발하여 법 집행의 신뢰저하 문제 초래
 - * 법원이 공정위로 하여금 기업에게 도로 반환하도록 한 과징금은 '13년 302억원 → '14년 2,518억원 → '15년 3,572억원으로 증가

□ 주요 문제점 및 개선내용

① 사건관리시스템 확립

- (문제점) 혐의없는 경우 전산입력 없이 자체종결 처리하여 사건 당사자가 진행상황, 종결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조사 착수 후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통지가 없었던 사례
- (개선대책) 조사착수 즉시 사건을 전산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후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모든 종결사건의 전산미입력 가능성 차단
 - * 내사사건도 조사착수 즉시 전산입력하는 등 검·경에 준하여 규정 개정
 - 현재 비공개 업무준칙으로 규율하는 사건처리절차를 '고시'에 반영하여 공개함으로써 외부통제 강화
 - * 기존 '사건절차규칙(고시)' 개정과 함께 '조사절차규칙(고시)' 제정 추진

②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개선

- (문제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준하는 '현장조사 공문'에 조사 목적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자의적 조사 우려
 - 현장조사 시 확보한 자료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여 확보한 증거를 둘러싼 다툼 소지
 - 변호인 참여권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 내지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
- (개선대책) 피조사자에게 제시되는 '현장조사 공문'에 '범위반 혐의내용', '조사대상' 등을 압수·수색 영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특정
 - * '조사절차규칙(고시)' 제정·반영
 - 검·경 업무준칙에 준하여 현장조사 과정을 기록,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 ▲ 자료 목록 작성·교부 ▲ 현장조사과정 확인서 작성 등
 - 피조사자 방어권 및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 전반을 정비
 - ▲ 변호인 참여권 ▲ 피조사자 의견제출권·진술권 고지
 - ▲ 증거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등 신설

③ 내부통제 강화

- (문제점) 직제·기능상 분리 운영되고 있는 조사부서와 심판 부서(1심 기능 수행) 인사교류로 인해 '내부통제 미흡 우려' 및 사건처리 지연사례 다수
 - * 공소시효가 3개월 미만으로 남아 고발되는 사례가 있음
- (개선대책) 조사부서 근무자가 인사교류를 통해 심판부서에 근무하게 된 경우, 과거 자신이 조사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 * 현재 위원에게만 적용되는 제척·기피제도를 심판부서 전직원으로 확대

- 사건별 시효를 전산 입력·관리, 현장조사에 대한 감독강화*, 공소 시효 만료 1년 이내 사건 별도 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

* 사업체 현장조사 후 14일 이내에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국·과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④ 투명한 사건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 (문제점)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목록 작성없이 임의 보관하는 사례가 있어 증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혐의없음 또는 심사 불개시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사건 당사자에게 처리결과 및 이유가 통지되지 않아 불편 초래
- (개선대책) 조사기록 및 기록목록 작성·보존을 의무화 하는 등 검·경에 준하는 체계적인 조사기록 작성·보존 규정 마련
 - 조사결과, 무혐의 등 계속 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때에는 무혐의 내지 심사불개시 종결처리하고 그 사유를 피조사업체에 통지

⑤ 소송 승소율 제고

- (문제점) 증거의 신빙성 및 절차위반 시비, 리니언시 업체 임직원의 진술번복 등으로 고액 과징금 부과사건에서 패소하는 사례 증가
- (개선대책)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및 임의성 보강을 통한 증거능력 확보
 - 리니언시 감면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하여 감면 신청의 진실성을 면밀히 심사하는 등 소송에서의 진술번복 방지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사건관리시스템 확립과 현장조사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 제·개정, '16년 중 시행
 - * 조사절차규칙(제정) 기록관리규정(제정)
 - * 사건절차규칙(개정), 자진신고감면고시(개정)

-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절차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피조사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신뢰 제고

14 특허권자 보호강화

□ 검토 배경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권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특허권 침해 구제에 장시일이 소요되어 적기의 보호가 미흡

* 특히, 신생 중소기업은 자본력 부족으로 구제절차 지연시 매우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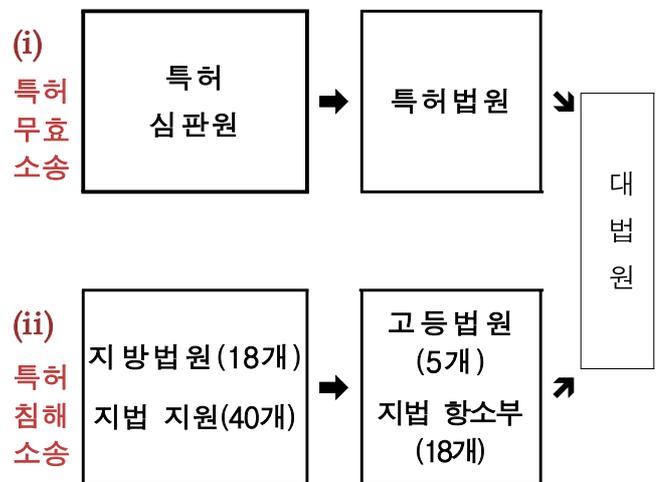
□ 현행 권리구제절차

- **(행정절차)** 특허청 내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 없이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

- **(특허소송)**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침해소송'으로 이원화

(i) 특허심판원·특허법원이 특허가 유효한지 먼저 판결한 이후에야

(ii) 일반 법원에서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여부를 최종 판단함으로써 2~3년 소요



- **(형사절차)** 특허권 침해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나, 특허관련소송 확정시까지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다수

□ 문제점

- 특허무효율이 높아 특허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낮음
 -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연간 225건의 특허 심사를 담당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심사 건수가 과중

*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미국(77건), 중국(59건), 일본(156건) 대비 높음

- 특허청에서 일단 특허를 등록해 준 후 특허심판원에서 재판을 거쳐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53.2%에 이릅니다
- *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41%), 영국(42%), 일본(20%) 대비 높아 등록된 특허에 대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
- 특허가 무효로 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일반법원은 즉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특허무효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 → 구제절차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

○ 권리구제에 장기간 소요

- (i)단계로 특허심판원·특허법원이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는데 1~2년이 걸리다 보니 (ii)단계 손해배상 등 최종 구제는 2~3년이 소요되는 실정
- 수사기관도 법원의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유보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 기간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함
- * 최근 10년간 특허침해사건 기소율은 5.2%에 불과(벌금 3.8%, 구공판 1.4%)

□ 개선 방안

○ 특허무효율을 낮추기 위해 특허심사·심판제도 개선

- 심사관 증원을 통하여 1인당 심사처리 건수를 적정화, 부실특허는 조기 정리할 수 있도록 '직권재심사제도' 도입, 특허무효 결정 前 보완기회 부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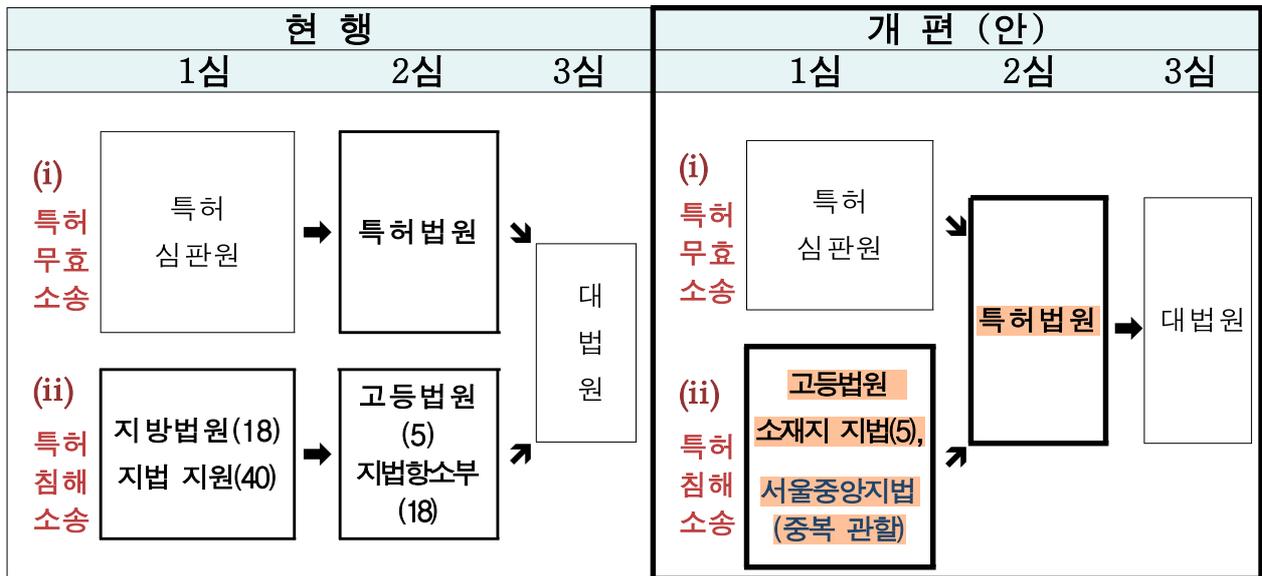
○ 특허무효심판의 신속 처리를 위한 'Fast Track' 도입

- 특허무효심판 중 Start-up 기업·개인의 특허권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신속 처리

○ 특허재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심 소송관할 집중

- 1심 관할을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에 집중 (서울중앙은 중복관할 인정)하고, 2심은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특허 분야 재판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

* 미국('82년), 일본('05년), 중국('14년)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소송의 2심 관할을 집중하였고, EU도 특허소송의 2심 전담을 위한 법원 설치 준비 중



○ 특허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 지원

- 특허전문 변호사 출신 검사 확충, 특허수사 관련 지침 제정을 통해 수사 절차의 신속성·전문성 제고

* 변리사 및 이·공계 박사 등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법원·검찰·특허청의 기술적 판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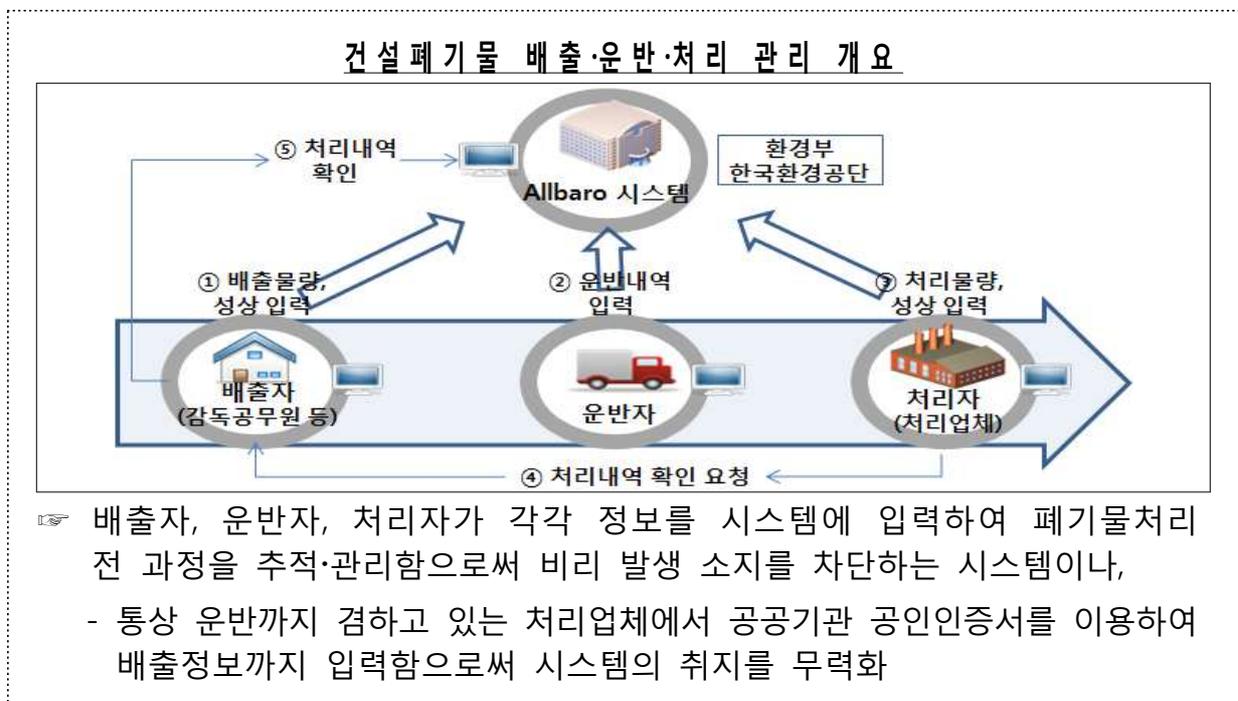
□ 진행 상황 및 계획

- 「특허심사·심판제도 개선방안」은 '15년 4월부터 시행 중
- 'Fast Track'은 특허심판원에서 시행 방안 마련 중('16년)
-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특허권 분쟁 및 기술탈취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 강구('16년)
-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16년 1월)

15 환경사업 예산누수 근절

□ 개요

- '12년 이후 국가기관 등 340여 공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346만여 회에 걸쳐 폐기물 업체에 의해 불법 사용
 - * '12년부터 '15.6월 사이 총 384개 기관(부처·지자체 포함)의 관련 예산 1조 7,037억원(전체 공공기관 폐기물 처리예산의 약 65%)이 부정 집행 의혹
- 공공기관 공인인증서 유출·도용 및 예산집행 부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추진



□ 실태 및 문제점

○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 담당 공무원 등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이메일 등으로 송부
- 일부 업체가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계속해서 신규 사업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감독공무원이 이를 묵인

○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성상(성질·상태), 배출물량 등 배출관련 정보를 임의 입력케 하는 등 폐기물 처리 직무 유기
- 건설폐기물법상 위탁할 수 없는 배출 감독업무를 감리업체에게 임의위탁한 후 그 직무수행 여부도 감독하지 않음 (00공사 등)

○ 예산집행 비리 발생

- 업체의 처리물량 등 설계변경 요구를 아무런 확인 없이 수용하여 폐기물 처리예산을 부정 증액 집행 (00시, 00공사 등)
- 운반차량의 적재한도를 현저히 초과한 물량을 운반한 것으로 과다 청구하였음에도 처리비용을 그대로 지급
- 증빙자료로 동일 사진을 중복사용하거나, 공인 인계서가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한 업체에 아무런 확인 없이 지급하였고 중량 등 배출물량이 기재되지 않은 송장 첨부를 그대로 수용 (00도 등)
- 폐기물의 상차·운반·하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시 동일차량의 1일 운행이 불가능한 회수로 부풀린 비용을 그대로 지급

□ 비리 원인 분석

- '10년 이후 공공폐기물 처리를 수기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한 일괄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 등의 인식과 업무행태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 업무가 방치됨
- 특히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공인인증서가 업체에 불법 유출되어 임의 조작을 통한 예산 부정이 구조적으로 발생
- 관련 부처와 기관간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미비로 민관유착의 빌미를 제공하고 예산 집행·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 개선 방안

① 담당 공무원 실명제 도입

- 담당자별로 복사가 불가능한 공인인증서를 개별 지급하고 발급 및 사용내역을 엄정 관리·점검
- 비위사례 발생시 당해 공인인증서 사용자를 즉시 추적하는 시스템 운용

② 건설폐기물 처리정보의 임의조작 차단

- 처리업체에서 측정한 계근값이 환경공단의 올바로(ALLBARO) 시스템에 자동전송되도록 하여 허위입력을 원천 차단
- 시스템을 개선하여 동일 IP의 배출·처리 인계서 작성을 차단하고 계근시스템 조작여부의 주기적 확인 등 감시 강화
-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 감리업체 등에 배출 확인업무 위임을 허용하고,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책임 강화

③ 건설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폐기물 배출시 배출 일시·장소·성상·적재량 확인이 가능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
- 지자체 시스템과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연계하여 차량 정보에 관한 지자체 정보를 활용, 허위·미등록운행 등을 자동 적출

④ 처벌강화 및 교육시스템 개선 등

- 관련 비위 재발시 공무원 등은 형법, 전자서명법 등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하고 폐기물업체 비리는 수사의뢰·허가 취소 등 제재 강화
- 환경직 위주로 진행된 올바로시스템 교육을 건축·토목 등 실제 처리담당자 위주로 시행토록 개선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미래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총 384개 기관의 불법 유출된 공인인증서를 전부 폐기하고 재발급 절차를 밟도록 조치
- 적발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364명을 수사의뢰·징계 등 조치하고 관련 업체 30곳을 수사의뢰 예정
 - * 부당 설계변경 등으로 허위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관 기관별로 환수조치
- 담당공무원 확인 없이 지급되어 온 연평균 4,800여억원의 공공폐기물처리 예산에 대해 부정 집행을 원천 차단

16 부정식품(3대 간식) 안전체계 개선

□ 현 황

- 국민생활과 밀접한 3대 간식(떡볶이·순대·계란)의 위생·안전 관련 단속시 빈번한 적발*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 야기
 - * (떡볶기) ○○식품(年매출 500억원)의 떡볶이용 ‘떡’에서 대장균 검출(’15.7)
 - * (순대) 제조업체 92곳 점검결과 42곳(45.6%)에서 위생취급위반 적발(’15.7)
 - * (계란) 깨진 계란 6만개 제과점 유통 적발(’15.9)
- 국민이 즐겨 먹는 ‘3대 간식’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대책’ 필요

□ 문제점

- 3대 간식 제조업체 총 1,544개 중 연 매출 1억원 미만이 76.3%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업체들의 난립으로 위생관리 허술

업 종	1억원 미만(年매출)	1억원 ~ 5억원	5억원 초과	전체
떡 제조업체	972	178	62	1,212개
순대 제조업체	158	31	11	200개
계란 가공업체	48	36	48	132개
총 합계	1,178 (76.3%)	245 (15.9%)	121 (7.8%)	1,544개

- 복잡한 유통 구조로 인한 효율적 관리·감독 곤란
 - 3대 간식 원료를 소비하는 곳은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하여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

- 유통·소비 단계의 감독을 강화하더라도 위생 문제는 반복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제조 단계부터 위생설비를 갖추는 등 원천 대책이 필요

□ 개선 방안

○ 식품제조 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의 위생설비 설치 의무화

- 2단계('16~'17년)에 걸쳐 3대 간식업체(391개)의 해썹(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의무화
 - * 어묵류는 '10년 해썹을 의무화하고 100% 인증을 완료하여 위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 해썹 인증시 설비 비용의 국고지원 확대*
 - * (기존) 1000만원 한도내 50%限 ⇨ (확대) 1000만원 한도내 70%限

- ▶ **(순대)** 단속 때마다 40% 이상 적발되는 등 위생이 가장 취약한 업종 →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165개 업체 전부에 대하여 해썹 의무화 ('16년 83개, '17년 82개)
- ▶ **(계란)** 제과점·중식당·한식당 등 다양한 공급처 존재 →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93개 업체 전부에 대하여 해썹 의무화 ('16년 47개, '17년 46개)
- ▶ **(떡볶이)** 해썹을 받지 않은 업체가 1,109개나 존재 → 종업원 10인 이상 업체 133개의 해썹을 의무화할 경우 생산량의 90% 이상 개선 가능 ('16년 44개, '17년 89개)

○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그 준수 실태를 관리·감독*

- * 업체규모에 따른 매뉴얼 차등화(영세업체는 간이한 매뉴얼로 부담 경감)

○ 위생설비 미비, 위생관리 매뉴얼 위반 업체는 해썹 인증 취소 (onestrike-out) 등 사후 관리 강화

- ※ '16년 본격 제도 시행에 앞서 '15년 연말까지 3대 간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계도 시행 중

□ 향후 계획

- 해썹 인증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및 위생 관리 매뉴얼 제정 등 추진
- 단속과 병행한 식품제조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국민위생 향상 및 영세업체 애로 최소화 도모

참고

관련 예산 및 자산내역

분 야		규 모	비고
① 재난통신안전망사업 관리		1조 7천억원	
② 평창동계올림픽사업 관리		5조 1천억원	
③ 대형국책사업 (R&D, SOC) 관리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R&D 사업	5조 7천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SOC 사업	12조 6천억원	
④ 방위사업 비리 예방시스템 구축		14조 3천억원	
⑤ 우정사업본부 자산운용 투명성 제고		105조	자산운용
⑥ 철도시설공단 개혁		12조	
⑦ 무역보증 시스템 개혁		1조 3천억원	
⑧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58조 4천억원	
⑨ R&D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		18조 9천억원	
⑩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4조 9천억원	
⑪ 부처 자체감사 역량강화			
⑫ 규제개혁 저해 행태·부조리 개선			
⑬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시스템 개선			
⑭ 특허권자 보호강화			
⑮ 환경사업 예산누수 근절		5천억원	
⑯ 부정식품 안전체계 개선			
합 계		240조 4천억원	